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9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신정훈 · 윤종오 · 전종덕
정혜경 · 손 술 · 한창민
김현정 · 임미애 · 최혁진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 및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의 재산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재산 중에서 특히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도록 함.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공직자의 과다 보유나 과도한 시세 차익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같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의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부동산은 투기대상이 아닌 생활의 필수재 · 안정적 주거를 위한 기본 재화로 인식되

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 전환이 공직사회부터 이루어질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짐.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투기 의혹이 주로 부각되며 정책역량 검증보다 도덕성 논란과 소모적 공방이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적 검증제도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인사검증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과 정치적 소모를 줄일 수 있음.

이에 재산 공개대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심사, 취득제한, 백지신탁 해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금지, 직위 변경 신청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18 신설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백지신탁·부동산백지신탁”으로 한다.

제2장의3(제14조의18부터 제14조의2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3 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제14조의18(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부동산매각대상자”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부동산(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게 된 날(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부동산매

각대상자가 된 날 또는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19제6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26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19제7항 또는 제14조의26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부동산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이하 제14조의24까지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음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할 것. 다만,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부동산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2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14조의19(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부동산 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부동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18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각 의무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날(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부동산매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부동산매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은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⑨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매각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들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1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부동산매각 대상자”로 본다.

⑭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0(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18제1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부동산매각대상자와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동산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18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의19를 준용한다.

제14조의21(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18제1항 또

는 제14조의20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2(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다음해 1월 중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

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4(부동산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2.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부동산매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부동산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19제7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부동산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4. 이해관계자로서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부동산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부동산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에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의25(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부동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백지신탁한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6(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19에 따른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19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4조의27(부동산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① 제14조

의18제1항에 따라 부동산 매각의무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부동산매각대상자는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부동산매각대상자가 제14조의19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18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의28(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18제1

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에 따라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를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제1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의3. 제14조의18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19제6항에 따른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8의4. 제14조의19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8의5. 제14조의20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8의6. 제14조의21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8의7. 제14조의21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8의8. 제1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백지신탁을 해지한 경우

18의9. 백지신탁한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25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부동산백지신탁 거부의 죄) 부동산매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중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을 “같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부동산백지신탁”으로,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를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로,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를 “포함한다), 제14조의5제10항 또는 제14조의19제10항에”로 한다.

제26조 중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를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를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를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부동산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21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21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를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로,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를 “포함한다), 제14조의5제11항제2호 및 제14조의19제11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백지신탁한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25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의2. 제14조의20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사람

6의3. 제1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하는 공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1조(목적) ----- ----- ----- -----주 식백지신탁·부동산백지신탁-- ----- ----- ----- ----- ----- ----- ----- ----- -----. <u>제2장의3 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 등</u> <u>제14조의18(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u>

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부동산매각대상자”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부동산(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게 된 날(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또는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19제6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26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19제7항 또는 제14조의26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부동산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이하 제14조의24까지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음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할 것. 다만,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때에는 부동산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여
야 한다.

나.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
의 관리·운용·처분에 관
여하지 아니할 것

다.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
의 관리·운용·처분에 관
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
다.

라. 제14조의2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에

<신 설>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14조의19(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부동산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부동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18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각 의무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된 날(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부동산매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부동산매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부동산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은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매각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

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1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 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 설>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
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
무자”는 “부동산매각대상자”로
본다.

⑭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4조의20(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18제1항에 따라 부
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
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부동산매각대상자와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
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
라 부동산취득이 제한되는 기
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
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
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

<신 설>

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동산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18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의19를 준용한다.

제14조의21(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2(신탁상황의 보고 등)

<신 설>

<신 설>

①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다음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신 설>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4(부동산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부동산백
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적
자율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
기관에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동산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
아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
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2.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
당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부동
산매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
우

3. 부동산백지신탁 신탁자의 직

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19제7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부동산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4. 이해관계자로서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부동산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부동산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에 관리·운용·처분에

<신 설>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의25(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부동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신 설>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백지신탁한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6(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 19에 따른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19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직권

<신 설>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4조의27(부동산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① 제14조의18제1항에 따라 부동산 매각의무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부동산매각대상자는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부동산매각대상자가 제14조의19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18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 설>

제14조의28(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

	<u>항에 따라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등)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10.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

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
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
우

11. ~ 1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1. ~ 18. (현행과 같음)

18의2. 제14조의18제1항을 위반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

18의3. 제14조의18제1항 각 호
의 행위 또는 제14조의19제6
항에 따른 부동산의 직무관련
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
지 못하는 경우

18의4. 제14조의19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
는 경우

18의5. 제14조의20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고하
지 아니한 경우

18의6. 제14조의21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한 경우

18의7. 제14조의21제2항을 위반
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u><신 설></u>	<u>· 처분에 관여한 경우</u> <u>18의8. 제14조의24제2항을 위반</u> <u>하여 부동산백지신탁을 해지</u> <u>한 경우</u>
<u><신 설></u>	<u>18의9. 백지신탁한 부동산 또는</u> <u>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u> <u>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u> <u>도 불구하고 제14조의25제1항</u> <u>을 위반하여 해당 부동산과</u> <u>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u> <u>제14조의25제4항을 위반하여</u> <u>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u>
19. ~ 21. (생략) <u><신 설></u>	19. ~ 21. (현행과 같음) <u>제24조의3(부동산백지신탁 거부</u> <u>의 죄) 부동산매각대상자가 정</u> <u>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18제1</u> <u>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을 위</u> <u>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부동</u> <u>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u> <u>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u> <u>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u> <u>한다.</u>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 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 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 ----- -----

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

같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회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제11조제
 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
 의18제5항에서-----
 -----포함한다), 제14조의
 5제10항 또는 제14조의19제10
 항에-----

제26조(출석거부의 죄) -----

-----제11조제2항, 제14조의
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
서-----

-----.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

(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
 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
 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신설>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
제5항에서-----

② -----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부동산백지신탁 관여
금지 위반의 죄) ① 부동산매
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
가 제14조의21제1항 본문을 위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 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21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
-----포함한다), 제14조의5제11항제2호 및 제14조의19제11항제2호에
